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원)

연번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 및 매각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면 적				
1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45,589	53,672,641	2017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조성사업	강** 외
2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2036-1 외 10필지	26,463	88,415,851	2017	거함산 향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	강** 외
	취득	건물	고제면 개명리 2054-1 외 3필지	791.6	144,606,600	2017		강** 외
3	취득	토지	위천면 장거리 190외 1필지	3,438	50,539,000	2017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 사업소신설	강** 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거창군수

1.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무주~고제간 터널 완료에 따라 용도폐지 되는 국도37호선 일부 구간의 건전한 재활용을 통해 남부 백두대간권 핵심 산악레저타운 조성
- 연접 시행 사업과의 연계·집적으로 외부 관광객의 효과적 유치 및 주민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3.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 대지면적 : 45,589㎡ (토지소유자 : 강** 외)
- 사업기간 : '17. 01월 ~ '18. 12월
- 사 업 비 : 11,700백만원<국비5,850/도비1,755/군비4,095>
- 주요기능 : 봅슬레이 1.7km, 모노레일 2.5km, 숲 체험시설 등

4. 재산취득 내용 ⇨ “따로 붙임”

5. 추진경위

- 2012. 12월 : 백두대간권 발전계획 사업 반영
- 2013. 05월 : 타당성 조사 용역
- 2013. 07월 : 경남도 투융자 심사
- 2013. 10월 : 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4년 예산 반영
- 2014. 12. 29 : 스피드익스트림조성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용역 실시
- 2016. 06. 07 :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6. 향후계획

- 2016. 12월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진입로등 군계획시설 결정
- 2017. 01월 : 용지보상실시
- 2017. 03월 : 사업발주
- 2018. 12월 : 사업완료

7.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8. 기대효과

- 기존 폐도를 활용한 산악레저타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재활용 모델 제시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과 자연휴양림의 연계로 레저와 힐링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창출
- 산악레저와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외부관광객의 증가로 주민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9. 위치도, 현황사진 및 조감도 ⇨ “따로 붙임”

□ 재산취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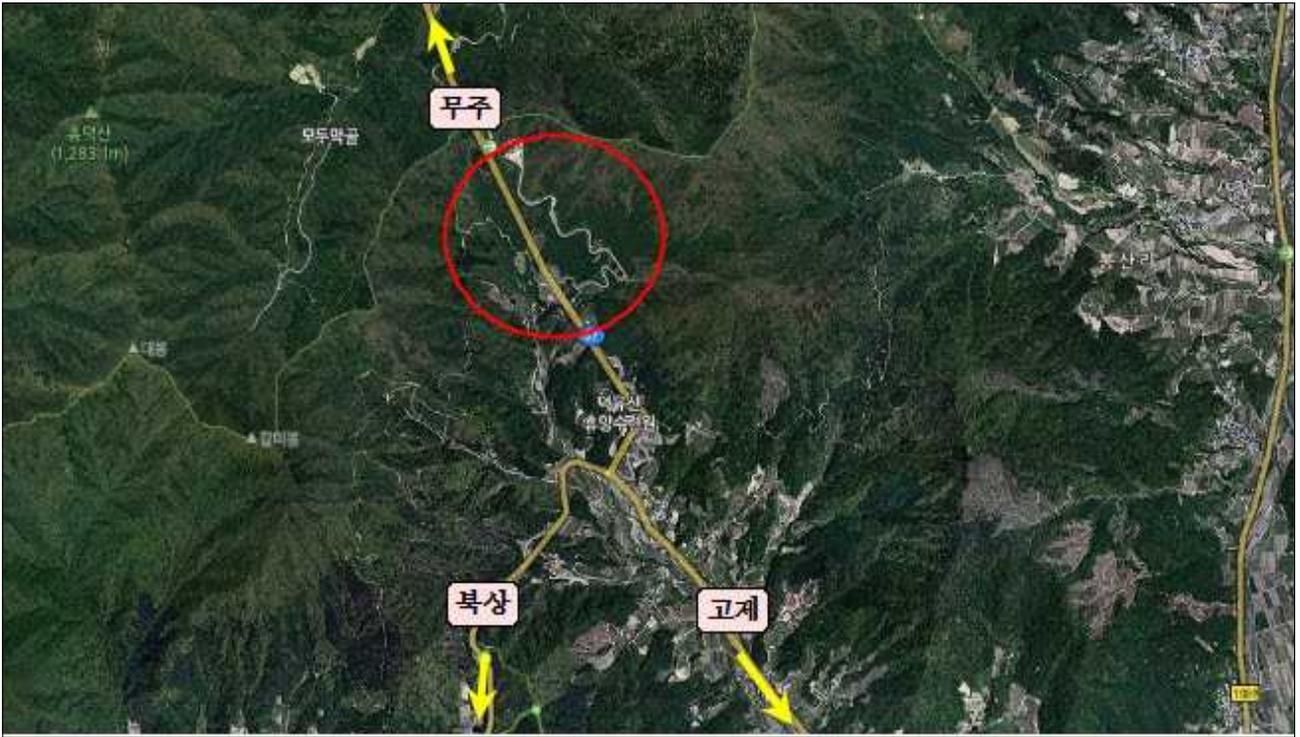
(단위: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계		65필지		45,589	53,672,641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2024	전	4	20,240	2017	스피드익스트림조성사업	강**
		고제면 개명리 2024-3	도	296	146,520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26-1	전	2,265	9,807,450			황**
		고제면 개명리 2026-3	도	8	8,400			국(국토해양부)
		고제면 개명리 2026	전	14	62,160			황**
		고제면 개명리 2027	도	92	45,540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30-11	전	7	16,590			강**
		고제면 개명리 2030-7	도	1	1,050			국(국토해양부)
		고제면 개명리 2031	임	155	122,295			강**
		고제면 개명리 2035-2	전	252	327,600			강**
		고제면 개명리 2035-8	도	39	19,305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35-9	도	101	49,995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36	도	675	334,125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37-1	전	549	1,712,880			백**
		고제면 개명리 2037	대	1	21,400			백**
		고제면 개명리 2038	전	1,239	7,334,880			김**
		고제면 개명리 2039-1	도	7	3,465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40-1	도	350	173,250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41	답	80	473,600			김**
		고제면 개명리 2043-2	전	77	145,530			윤**
		고제면 개명리 2048	전	75	177,750			김**
		고제면 개명리 2049-5	전	129	288,960			강**
		고제면 개명리 2051-12	도	169	305,890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051-1	전	6	27,660			성**
		고제면 개명리 2051-3	답	82	43,050			강**
		고제면 개명리 2051-5	전	50	78,000			강**
		고제면 개명리 2063-1	전	1,626	5,203,200			하**
		고제면 개명리 2070	대	238	8,401,400			변**
		고제면 개명리 2071	답	261	294,930			변**
		고제면 개명리 2072	임	197	54,175			변**
고제면 개명리 2073-1	전	443	1,391,020	강**				
고제면 개명리 2073-2	전	327	349,890	강**				
고제면 개명리 2074	전	97	103,790	변**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2075	임	156	70,200	2017	스피드익스트림조성사업	황**
		고제면 개명리 2076	대	193	2,837,100			강**
		고제면 개명리 2078	대	7	97,300			황**
		고제면 개명리 2082	전	84	89,040			구**
		고제면 개명리 2268	구	457	827,170			국(농수산부)
		고제면 개명리 2269	도	129	233,490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2270	도	235	425,350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산19-12	임	3,113	933,900			황**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1,006	3,995,178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산19-17	도	306	111,078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산19-18	임	2,081	772,051			황**
		고제면 개명리 산19-22	임	2,125	614,125			백**
		고제면 개명리 산19-23	임	120	31,560			백**
		고제면 개명리 산19-6	임	745	387,400			박**
		고제면 개명리 산20-1	임	1,544	602,160			강**
		고제면 개명리 산20-4	임	577	112,515			강**
		고제면 개명리 산21-1	도	103	37,389			강**
		고제면 개명리 산21-2	임	166	72,542			성**
		고제면 개명리 산21-3	임	2	962			강**
		고제면 개명리 산21	임	940	256,620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15	도	1,642	596,046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16	임	62	17,546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23	임	281	73,060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24	도	4,198	1,523,874			국(건설부)
		고제면 개명리 산22-26	임	989	264,063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29	임	434	118,482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35	임	1,282	342,294			강**
		고제면 개명리 산23-10	도	55	19,965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11	임	460	136,620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1	임	1	213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8	도	585	212,355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9	임	1,599	315,003			박**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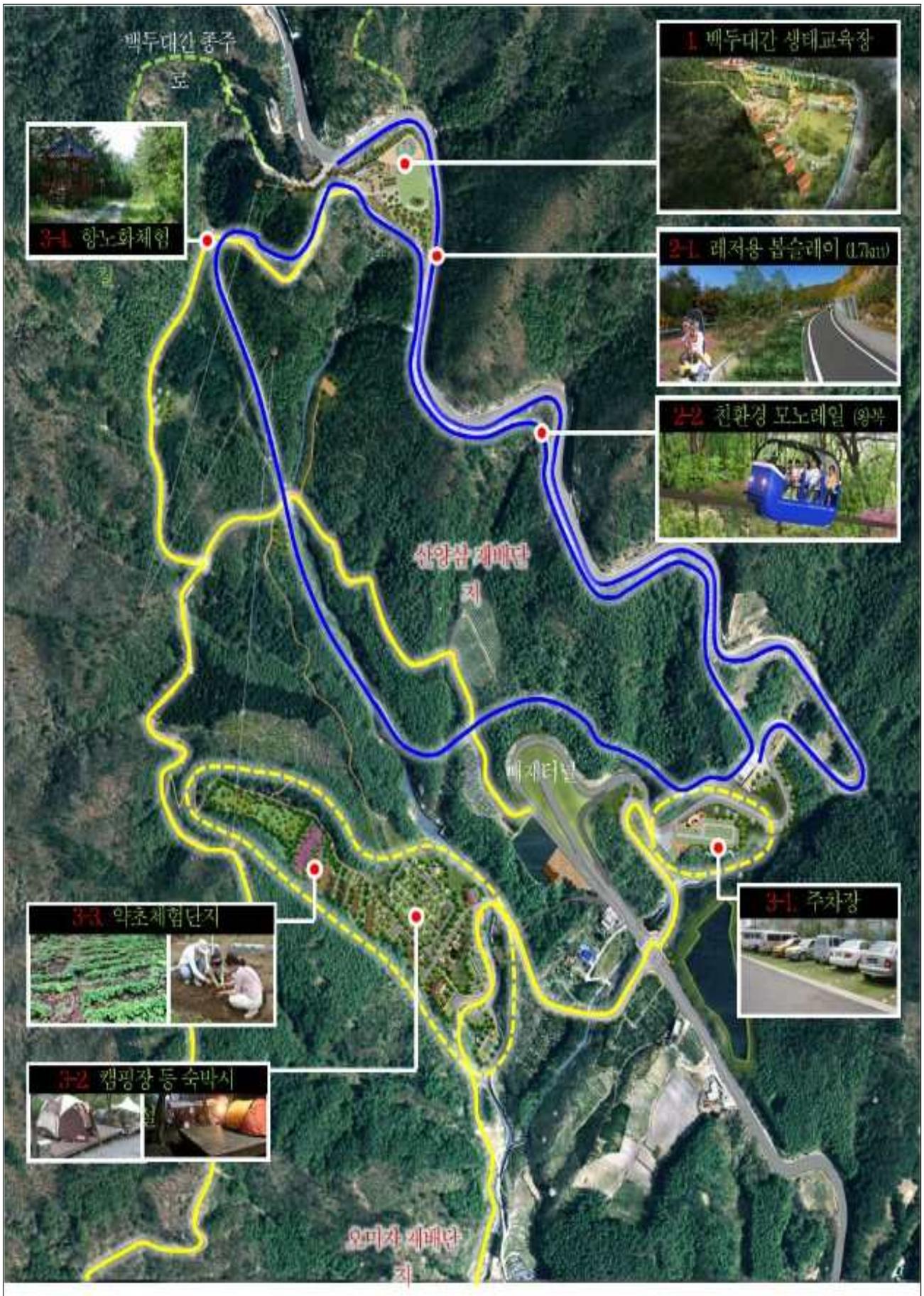
□ 위치도 :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 현황사진 :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 조감도 :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거창군수

② 거합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거합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백두대간 폐도(국도 37호선) 주변 생태복원과 체험단지 조성으로 지역자원 홍보 및 주민소득 증대
- 단지 내 시행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스피트 익스트림타운 등과 연계 체험·체류·레저가 가능한 덕유산권 핵심관광 타운화

3.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6-1 외 10필지
- 대지면적 : 26,463m² (황** 외 4)
- 건축규모 : 791.6m²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사 업 비 : 9,900백만원 (국4,950/도1,485/군3,465)
※ 부지매입 별도
- 주요기능 : 덕유산권 핵심관광 타운

4. 재산취득 내용 ⇨ “따로 붙임”

5. 추진경위

- 2013. 10월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 2014. 03월 : 내륙권발전(백두대간권) 선도사업 선정
- 2014. 05월 : 개발구역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
- 2014. 06월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고시
- 2014. 08월 : ‘14.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
- 2014. 11월 : 거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반영

- 2015. 02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016. 08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국도비 확보

6. 향후계획

- 2016. 12월 ~ 2017. 06월 : 실시설계
- 2017. 02월 ~ 06월 : 토지매입
- 2017. 07월 : 착 공
- 2019. 12월 : 준 공

7.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8. 기대효과

- 우리군은 『제5차 경남권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산악·레저/건강·휴양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악레포츠산업 발굴 및 개발수요 증가
- 현재 사업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빼재 스피드익스트림 사업 연계로 계정 이용 가능한 백두대간권 핵심 산악레저 타운 완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9. 위치도 및 조감도 ⇨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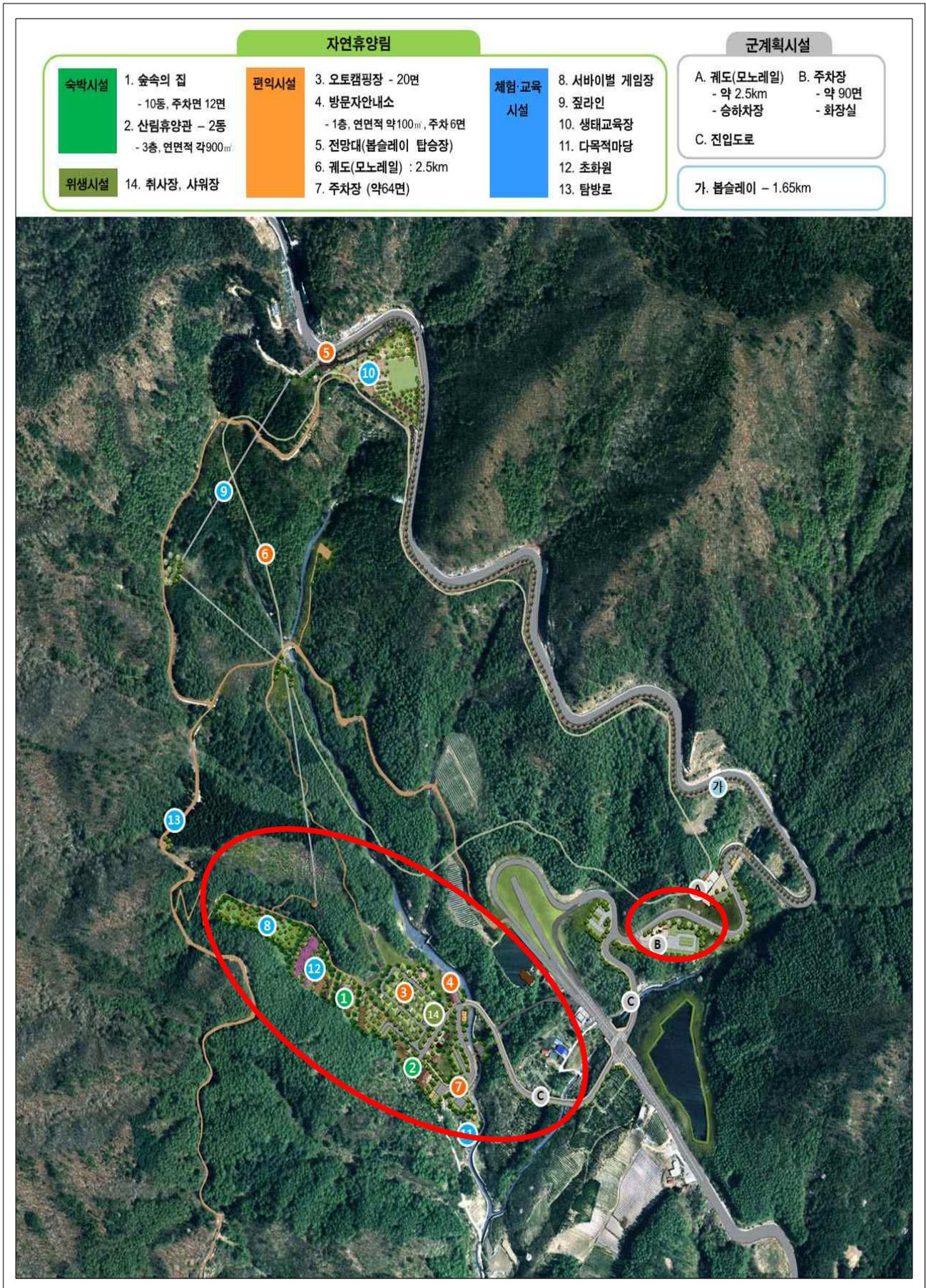
□ 재산취득 내용

(단위:㎡,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용도)	취득면적				
합계					233,022,451			5명
토지소계		11필지		26,463	88,415,851			(5명)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2036-1	전	535	823,900	2017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 지구 구성	황**
		고제면 개명리 2052	전	1,421	3609,340			김**
		고제면 개명리 2053	전	5,468	13,888,720			강**
		고제면 개명리 2054-1	목	628	6,405,600			변**
		고제면 개명리 2058	답	2,179	9,151,800			강**
		고제면 개명리 2055	잡	973	9,924,600			박**
		고제면 개명리 2064-1	답	995	4,179,000			강**
		고제면 개명리 2066	장	1,777	29,498,200			
		고제면 개명리 2068	대	410	680,6000			황**
		고제면 개명리 산19-20	임	2,461	666,931			
		고제면 개명리 산19-21	임	9,616	3,461,760			
건물소계		4건		791.6	144,606,600			
취득	건물	고제면 개명리 2054-1	우사	168.0	23,520,000	2017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 지구 구성	변**
		고제면 개명리 2055	축사	42.8	5,992,000			강**
			축사	195.4	19,540,000			
			창고	36.3	3,630,000			
		고제면 개명리 2066	공장	98.0	22,540,000			
			창고	52.5	5,775,000			
		고제면 개명리 2068	저온창고	65.8	15,787,200			
			주택	132.8	47,822,400			

※ 기준가격은 2016년도 공시지가 및 기본감정평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지 변동가능성 있음)

□ 위치도 및 조감도 : 고제면 개명리 2036-1 외 10필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거창군수

③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1. 제안이유

-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토지취득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
 - 고가의 농기계구입비 부담 경감과 임대율 제고
-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편의 제공
- 정부의 임대사업소 확대정책 및 군수공약사업 조기 실현

3.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190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3,438㎡ (토지소유자 : 강**)
- 건축규모 : 지상 1층(운영사무실 1동 및 농기계보관창고 1동), 연면적 886㎡
- 사업기간 : '18. 01월 ~ '18. 10월
- 사 업 비 : 1,900백만원(국800/도240/군비860)
- 주요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무실 및 농기계 보관창고

4. 재산취득 내용

(단위:㎡, 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438	50,539,000			
취득	토지	위천면 장거리 190	답	1,679	24,681,000	2017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 사업소 신설	강**
		위천면 장거리 191	답	1,759	25,857,000			강**

5 추진경위

- 2016. 10월 :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추진 계획 수립
- 2016. 10월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신설 계획 심의 의결

6. 향후계획

- 2017. 01월 ~ 06월 : 토지매입
- 2017. 07월 : '18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사업 신청
- 2018. 01월 ~ 02월 : 설계용역
- 2018. 03월 : 착 공
- 2018. 10월 : 준 공

7.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8. 기대효과

- 수승대권역(북상, 위천, 마리)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
- 농번기 임대농기계 병목현상 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

9.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 붙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천면 장기리 190번지 외 1필지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소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10.)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호신설 2014.10.01)

④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 ⑤ 민간위원 중 위원외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5.12.10.)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항신설2015.12.10.)
-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항신설 2015.12.10.)
- ⑨ 심의회에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항신설2015.12.10.)
-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항신설2015.12.10.)
- ⑪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